

##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       |                                   |  |       |             |
|-------|-----------------------------------|--|-------|-------------|
| 성명    | 한글                                | 김성규  | 일본명   |             |
|       | 한자                                | 金聖奎  | 이명    |             |
| 출생연월일 | 1891년 6월 7일                       |  | 사망연월일 | 1919년 3월 4일 |
|       | 平安南道 江西郡 江西面 德興里 423번지 [1919년 주소] |  |       |             |
| 주요경력  | 1904년 이전                          |  |       |             |
|       | 1891. 6. 7                        | 출생<br>(陸軍憲兵伍長佐藤實五郎外四名敍勳ノ件, 서훈권6, 내국인6, (1919))                         |       |             |
|       | 1904년 ~ 1945년                     |  |       |             |
|       | 1910. 8.14                        | 헌병보조원이 되어 평양헌병대 평양헌병분대에 편입<br>(陸軍憲兵伍長佐藤實五郎外四名敍勳ノ件, 서훈권6, 내국인6, (1919)) |       |             |
|       | 1911. 2.15                        | 헌병보조원 7등급으로 승급<br>(같은 자료)  |       |             |
|       | 1912. 6.25                        | 동 6등급으로 승급<br>(같은 자료)  |       |             |
|       | 1913. 11.30                       | 동 5등급으로 승급<br>(같은 자료)  |       |             |
|       | 1916. 4. 1                        | 동 4등급으로 승급<br>(같은 자료)  |       |             |
|       | 1919. 3. 4                        | 평양헌병분대 사천주재소에서 시위 진압에 종사 하던 중 사망<br>(같은 자료)                            |       |             |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와 관련하여

1) 3·1운동 당시 시위 군중을 살상함

▶ 『陸軍憲兵伍長佐藤實五郎外四名殺勳ノ件』, 『서훈』 권6, 내국인6, 1919; 『동아일보』, 1921년 3월 28일, 9월 16일, 18일, 10월 24일, 1922년 4월 8일, 28일, 5월 15일, 10월 22일; 『독립신문』, 1921년 4월 9일, 11월 11일, 1922년 5월 27일, 10월 30일

1919년 3월 4일 평남 대동군 금제면 원장리 장날에 그 지방 일대 민중 3,000명 이상이 공립보통학교와 야소교 교회당에 집합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강서군 반석면 상사리 사천시장 방면으로 시위 행진할 때, 헌병보조원 김성규는 사천헌병주재소 소속 주재소장 사토(佐藤實五郎) 상등병과 조선인 헌병보조원 강병일(姜炳一), 박요섭(朴堯燮) 등과 함께 시위민중을 향해 발포하여, 조선인 13명을 사살하고 40여 명에게 중경상을 입힘.

▶ 『동아일보』 1921년 3월 28일, 9월 16일, 18일, 10월 24일, 1922년 4월 8일, 28일, 5월 15일, 10월 22일; 『독립신문』, 1921년 4월 9일, 11월 11일, 1922년 5월 27일, 10월 30일; 『獨立運動史資料集』 5권, 국가보훈처, 789~797쪽, 10권 756쪽, 14권 939쪽; 『獨立有功者功勳錄』 3, 국가보훈처, 955~957쪽.

1919년 3월 4일 사천시장 일대에서 만세운동을 하는 시위 군중을 사살한 헌병보조원 김성규, 강병일(姜炳一), 박요섭(朴堯燮), 사천헌병주재소장 사토 상등병은 시위대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당함.

## 【참고사항】 조진탁

- 출전: 『獨立有功者功勳錄』 3, 국가보훈처, 955~957쪽.

당시 시위군중 가운데 조진탁(趙振鐸)은 아들 2명이 사살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헌병들을 죽이고 주재소를 방화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사건 이후 타지로 피신하였다가 1921년 3월 19일 원산에서 일경에게 체포되어, 1922년 10월 17일 평양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함.

(조진탁은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 받음)

2. <특별법> 제2조 제19호(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와 관련하여



### 1)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훈포상

▶ 「陸軍憲兵伍長佐藤實五郎外四名敘勳ノ件」, 『서훈』 권6, 내국인6, 1919.

3·1운동 시 평남 사천에서 시위민중을 다수 살상하고 시위대에 의해 사망한 것이 공적으로 인정되어 일본 정부로부터 육일장(旭日章) 8등이 서훈됨.

▶ 「陸軍憲兵補助員朴灝大外三千四百八十二名へ韓國併合記念章授与ノ件」, 내각·총리부 태정관, 『한국병합기념장제가서』 권3, 1913년 3월 29일


1912년 8월 1일 평양 헌병분대 헌병보조원으로 재직 중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 관 란

1. 김성규는 1919년 3·1운동 당시 평양 헌병분대 사천주재소의 헌병보조원으로서, 평안남도 사천에서 만세시위에 나선 조선인 시위 군중에게 발포하여 13명을 사살하고 4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김성규는 1910년 8월 14일부터 평양헌병대에서 헌병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선인을 감시·탄압하는 최일선에서 활동함으로써 일제에 지속적으로 협력하였고, 1912년에 ‘한국병합기념장’(칙령 제56호)을 받았다. 당시 헌병보조원으로서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자는 대체로 1908년 이후 후기 의병토벌 등에서 일정한 공로가 있었던 사람들이어서, 김성규 역시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김성규는 위 시위 진압 중 사망한 것이 공적으로 인정되어 일본 정부로부터 옥일장(旭日章) 8등을 받았는데, 이는 **<특별법> 제2조 제19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상의 조사 내용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김성규는 1910년 이래 까지 우리 민족 구성원을 직접 탄압하는 일본의 최일선기구인 조선주둔일본군 헌병대에서 헌병보조원으로서 일제에 협력하는 데 적극 앞장서서 3·1운동에 나선 조선인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였으며, 또 그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서훈을 받았고 한국병합 후 병합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김성규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3호, 19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 월 12 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